

『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』 수탁기관 모집 공고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조례」 등에 따라 『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』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4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공모개요

가. 위탁사업명 :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리·운영 위탁

나. 공 고 기 간 : 2024. 3. 4.(월) ~ 3. 25.(월)

※ 1개 법인 신청시 10일(주말포함) 이상 재공고

다. 위 탁 시 설 :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종사자	비고
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	강남구 논현로86길 20	지상 1층~2층/ 386.4㎡	5명 (1명 채용예정)	

※ 2024.6.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이전 예정(테헤란로8길 36, 3층)

라. 위 탁 기 간 : 2024.6.10.~2029.6.9.(5년)

마. 위 탁 사 무 : 「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」 관리·운영 전반

- 수탁 재산의 유지 및 관리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조례」 제9조(지원사업), 제11조(시설의 기능), 제12조(사무의 위탁) 관련 사항
- 그 밖에 시설의 사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바. 예 산 :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

○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2024년 운영보조금 : 457,880천원(본예산 기준)

※ 운영보조금(인건비 등) 일부 보조되며, 운영보조금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 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충당 운영해야 함

사. 수탁자 선정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· 선정

2.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

가. 신청자격

공통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

○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「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」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

관 련 근 거

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】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【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】

-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고용유지 및 승계사항

○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(80%) 의무가 발생함

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

- ‘특별한 사정’ 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(80% 이상) 의무 발생
- 고용승계 예외 적용이 가능한 ‘특별한 사정’ 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
 - ①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(21. 5. 4.)에서 명시한 사유
 -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
 -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의 경우
 - ② ‘사무종료,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’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
 -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, 자치법규,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

나. 결격사유

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	▶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회사가 처벌(징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)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	▶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이상 받은 법인
	▶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·수탁 해지된 법인
	▶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(예산회령, 법인명의 대·차용, 인권착취 등)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, 관련 사항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
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	▶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	▶ 법인의 재정능력 등(기본재산·운영자금 등)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기타	▶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▶ 민간위탁 적격심사결과 적격 수탁자가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 참여 불가

다. 신청서 접수

- 일 시 : 2024. 3. 25.(월) ~ 2024. 3. 29.(금), 09:00 ~18:00 <주말제외 5일간>
- 장 소 :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, 복지정책과 (본관 4층)
- 접수방법 : 방문 제출(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 불가, 접수 후 자료 변경불가)
- ※ 신청서 제출은 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(직인 필) 소지한 직원 직접 제출

라. 제출서류

< 첨부 서식 준수 >

- ① 서약서
-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
- ③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
-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
- 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- ⑥ 대표자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시)
- ⑦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(법인 인감 날인)
- ⑧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요약서(A4용지 5매 이내)
- ⑨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
- ⑩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사업제안서

< 그 외 첨부 서류 >

- ⑪ 법인기본현황
 - 법인 : 등기부등본, 설립허가증(등록증), 고유번호증, 정관사본, 인감증명서 각 1부
- ⑫ 법인대표자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1부
- ⑬ 시설 운영대표자(임용예정자) 이력서, 경력 및 재직증명서, 자격증 사본 각 1부
- ⑭ 최근 3년간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, 종합성과평가, 회계감사, 지도점검 결과
- ⑮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
- ⑯ 발표자료(PPT) 책자 각 12부
 - ※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
 - ※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(또는 유효기간 내 증명 가능 서류)

마. 제출방식

- ‘라. 제출서류’ 항의 ⑦~⑮까지의 서류(증빙자료 포함)를 1권의 책으로 편철(12권 제출)
 - ※ 1권의 책자(규격 A4/세로) 양면인쇄, 쪽번호 기입, 색인표 부착
 - ※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

○ ‘라. 제출서류’ 항의 ① ~ ⑮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(PDF)로 제출
(email : agape0u@gangnam.go.kr)

※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

○ ⑯ 발표 자료(PPT)는 심사 3일 전 제출

[전자파일은 이메일, 책자형(12부)은 직접 제출]

바. 신청 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검증을 위하여 공모 신청기관 현장 방문할 수 있음

3. 위탁운영법인 선정

가.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

○ 일 시 : 2024. 4. 26.(금), 14시 예정

○ 장 소 :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

※ 불참자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
※ 심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 통지 예정

나. 심사방법 :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 배점

○ 제안설명(PPT 작성 자료로 10분 이내), 질의응답(10분 이내)

○ 제안설명은 법인 대표 또는 임직원(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자), 시설장(예정자)가 함

○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종사자는 3인 이내로 하고
설명 순서는 서류접수 순서대로 함

다. 심사기준(심사항목 및 배점)

구 분		심사항목	배점(점)
법인의 공신력 (정량평가) 20점	사업수행실적 (5)	◦ 최근 3년간(2021년 1월~2023년 12월)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(건수)	5
	사업성과평가 (5)	◦ 최근 3년간(2021년 1월~2023년 12월)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(점수)	5
	경영상태 (5)	◦ 신용평가 등급서 ◦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	5
	회계투명성 (5)	◦ 자체감사, 외부감사, 예결산공고 등	5

구 분		심사항목	배점(점)
사업 수행능력 (정성평가) 80점	법인 도덕성· 책임성(10)	◦ 성희롱예방·인권·청렴도(회계부정)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	10
	사업계획의 적정성 (25)	◦ 발전전략,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◦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(이용자 및 시설 활성화) ◦ 신규 프로그램 계획 / ◦ 사회적고립 1인가구 발굴 방안 ◦ 센터 홍보 방안 등의 적절성	25
	시설운영의 전문성 (25)	◦ 조직·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- 시설장의 전문성 및 종사자 배치의 적절성 등 - 보유 인력의 전문성(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 수) ◦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의 적절성 (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, 방문객 안전 관리, 적정성 등) ◦ 행정·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(목적·수익사업 계획 포함)	25
	안전보건확보 (10)	◦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- 안전관리 규정·지침·매뉴얼 구비 여부, 재해대응체계 현황 - 안전전문인력(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) 보유현황 - 안전 관련 예산 편성현황 -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	10
	종사자 고용안정성 -노무관리- (10)	◦ 노동관계법령 준수, 노사관계,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보호 가이드라인’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 - 고용승계 및 유지,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, 취약계층 채용, 노동관계법령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	10
계			100

라. 선정방법 :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

- 서면 심사 및 대면 심사 후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
- 위원들의 점수 합산 후, 평균하여 신청 법인의 총 득점을 집계(최고·최저점 제외)
- 70점 이상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
(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법인의 공신력, 사업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 선순위자로 하고,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)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2회 실시 후에도 신청 법인이 1개소일 경우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
-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 모집 절차 다시 이행

마. 선정자 발표 : 2024년 5월 중 예정,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
바. 협약체결 : 우선협상대상 법인과 협약체결

※ 단, 우선협약대상법인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 법인과 협약 체결

4. 위탁조건

- 가. 수탁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조례」, 보건복지부 운영지침, 위·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
- 나. 수탁법인은 건물전체 시설관리에 있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
- 다. 수탁기관은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

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라. 위탁시설과 법인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위탁 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

마.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재위탁할 수 없음

바.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강남구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

사. 시설은 정치활동,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

아. 운영계획의 결정·변경 등 주요 사항은 강남구와 협의하여 결정

자.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·수탁 협약으로 정함

5. 기타사항

- 가.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나. 제출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은 무효로 함.
- 다.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
- 라.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짐
- 마. 위탁금액은 운영비 및 인건비 조정, 예산심의, 강남구 심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바.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에게 있음
- 사. 제안서의 작성·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
- 아.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- 자.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’ 및 ‘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’, ‘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’ 를 협약시 제출하여야 하며, ‘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’ 의 내용을 미이행 시 계약 해제·해지 가능
- 차. 기타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(보건복지부)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름
- 카.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으로 문의(☎02-3423-5777)

붙임 제출서식(수탁운영신청서 등) 및 참고자료 1부. 끝.